

제261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친화도시  
조성에 관한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【유승용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5. 6. 13.

사 회 건 설 위 원 회  
전 문 위 원

#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친화도시

## 조성에 관한 조례안」

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경 과

의안 제538호로 2025년 5월 30일 유승용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6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# 2. 제안이유

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.

### 3. 주요내용

가.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
나.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다. 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및 시행(안 제4조~제6조)

라. 위원회 설치(안 제7조)

마. 정책연구(안 제8조)

바. 비용 지원 및 협력, 홍보(안 제9조~제11조)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청년기본법」,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」

나. 예산조치: 필요시 반영

다. 입법예고(2025. 6. 3.~2025. 6. 10.) 결과: 의견 없음

## 5. 검토의견

### □ 제정 배경 및 취지

-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 「청년기본법」이 일부개정(2023. 3. 21.개정, 2023. 9. 22.시행)을 통해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고, 청년발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특화지역(이하 “청년친화도시”라 한다)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.
- 한편, 영등포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청년인구 비율이 두 번째로 높고, 청년 인구 수는 여섯 번째로 많아 청년층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임.
-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영등포구는 2025년 1월 1일자로 구 전략사업의 총괄 추진 및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미래도시국을 신설하였으며, 그 하부 조직으로 ‘청년 지원 및 소통 강화’를 위한 부서인 청년정책과를 설치하여 영등포구의 성장 발전의 핵심 동력인 청년들을 위한 정책에 주력하고 있음.
- 이와 같은 제도적 기반과 지역적 여건을 반영하여, 본 조례안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사회적

참여 확대 및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건임.

#### □ 주요 내용으로

- 안 제2조(정의)는 상위법인 「청년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서 “청년”을 ‘19세 이상 34세 이하’로 정의하고 있으나, 같은 조 단서에서 ‘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’고 규정하고 있는 바, 영등포구 청년 정책의 실정에 부합하도록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」(이하 “청년기본조례”라 한다)에서 정한 청년 및 청년정책의 정의를 따르도록 규정한 것으로 판단됨.
- 안 제3조(구청장의 책무)는 법 제24조의6(청년친화도시) 제1항에 따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.
- 안 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 등)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을 규정한 조항으로, 해당 기본계획이 청년기본조례 제6조에 따라 수립되는 ‘청년정책 기본계획’에 안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, 이를 본 조례안에 따른 기본 계획으로 간주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한 것으로 판단됨.
- 안 제6조(연도별 시행계획 수립·시행)는 안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, 이는 정책의 실질적인 추진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됨.
- 안 제7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의 전문성 강화 및 합리적 추진을 위해 위원회를

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기본조례 제8조에 따른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- 안 제8조(정책연구 등)는 영등포구의 지역적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 추진을 위해 연구 및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 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또한 함께 규정함.
- 안 제9조(비용 등 지원)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, 청년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민간 참여 유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.

#### □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상기 제정배경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「청년기본법」의 개정된 취지를 반영하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
  -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, 위원회 운영, 예산 지원 등 제도적 실행 기반도 체계적으로 갖추었으며, 상위법의 범위에서 적절히 규정하였음.
- 또한, 청년 인구 비율이 높은 영등포구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조례의 제정 취지 또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# 참고 자료

## 1

### 청년기본법

**제3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년”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 다만,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.

**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,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.

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·실시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24조의6(청년친화도시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, 청년발전,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(이하 이 조에서 “청년친화도시”라 한다)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무총리는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 또는 시·군·자치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청년친화도시의 지정 기준·절차, 지원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2

### 청년기본법 시행령

**제21조의8(청년친화도시의 지정)** ① 법 제24조의6제1항에 따른 청년친화도

시(이하 “청년친화도시”라 한다)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
2. 청년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
3. 청년참여, 청년발전, 청년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과 관련한 업무 실적에 있을 것
4. 그 밖에 국무총리가 청년친화도시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

② 법 제24조의6제2항에 따라 청년친화도시의 지정을 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무총리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
  2.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계획에 관한 서류
- 가. 해당 지방자치단체 청년발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 
나. 해당 지방자치단체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  
다. 해당 지방자치단체 청년의 권익 증진 방안

③ 국무총리는 법 제24조의6제2항에 따라 청년친화도시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.

④ 청년친화도시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친화도시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3. 9. 12.]